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226호서식]

수사서류 열람·복사 불허가 등 통지서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
불허가 사유 (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69조제6항)	
①	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른 열람·복사 대상이 아님
②	서류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
③	서류의 공개로 범인의 증거인멸·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
④	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

결정 내용

불허가·범위 제한 대상 수사서류 내역	사유
○○○서	①
○○○서	②

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69조제6항 및 이 규칙 제132조제4항·제5항(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허가/범위를 제한함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※ 문의: (담당부서 및 담당자)

(전화번호)

(○○지방)중대범죄수사청장 직인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